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⁶ G06F 19/00	(11) 공개번호 특 1997-0066968
	(43) 공개일자 1997년 10월 13일
(21) 출원번호	특 1996-0052671
(22) 출원일자	1996년 11월 07일
(30) 우선권주장	345291 1995년 12월 06일 일본(JP) 75183 1996년 03월 04일 일본(JP)
(71) 출원인	가부시키가이샤 에이, 피, 에무 고히라 히로아키 일본국 이시가와켄 고마쓰시 소노마치하 170반치 1고
(72) 발명자	고하라 히로아키 일본국 이시가와켄 고마쓰시 소노마치하 170반치 1고 가부시키가이샤 에이, 피, 에무 내
(74) 대리인	강동수, 강일우, 홍기천

심사청구 : 없음

(54) 통신회선을 이용한 상품거래에서 서비스권의 발행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상품의 구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판촉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권의 발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회선을 이용한 상품거래에 있어서 서비스권의 발행방법에 관한 것이고, 복수의 독립한 가맹점이나 단일의 판매점, 예컨대 본점·지점등의 복수의 계열점으로 조직하는 판매점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통신회선을 이용한 상품의 거래에 어울리는 서비스권의 발행방법을 제공하고, 또한 서비스권의 보존관리를 유효하고 확실하게 한 것이다.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통신회선을 이용하여서 가맹점(2)이 발신하는 상품의 문자·화상데이터를, 수신한 구매자(3)가 단말기의 표시장치(9)에 표시하고, 표시되는 상품을 선택하여, 조작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통신회선을 이용한 쇼핑에 있어서, 가맹점(2) 및 구매자(3)와 서비스권 발행자(1)의 각각의 통신기기(4)를 회선으로 잇고, 서비스권 발행자(1)는 각 가맹점 및 각 구매자의 개별리스트, 개별서비스권의 발행·취득에 의한 증감데이터의 연산·기억·관리수단을 가지며, 가맹점(2)이 행하는 거래액에 따른 서비스권(S)의 구매자(3)에의 제공 및 서비스권발행자(1)에의 제공의 연락 및 구매자(3)가 행하는 가맹점(2)에서 취득서비스권의 사용을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서 각 단말기로 행하고, 가맹점(2) 및 구매자(3)는 자기 또는 구매자의 서비스권(S)의 서비스권발행자(1)가 관리하는 증감기록을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단말기의 표시장치(9)로 표시·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상품의 통신판매

대표도

도 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통신회선을 이용한 상품거래에서 서비스권의 발행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서비스권의 흐름을 나타낸 블록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의 1형태를 나타낸 통신기기의 관련을 나타낸 블록도, 제3도는, 거래확인표시의 패턴예를 나타낸 표시면을 표시한 도면, 제4도는, 서비스권의 획득합계(獲得合計) 패턴예를 나타낸 표시면을 표시한 도면.

본 건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회선을 이용하여서 가맹점이 발신하는 상품의 문자·화상데이터를, 수신한 구매자가 단말기의 표시 장치에 표시하고, 표시되는 상품을 선택하여, 단말기의 조작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통신회선을 이용한 쇼핑에 있어서, 가맹점 및 구매자와 서비스권 발행자의 각각의 통신기기를 회선으로 잇고, 서비스권 발행자는 각 가맹점 및 각 구매자의 개별리스트, 개별서비스권의 발행·취득에 의한 증감데이터의 연산·기억·관리수단을 가지며 가맹점이 행하는 거래액에 따른 서비스권의 구매자에게 제공 및 서비스권 발행자에게 제공의 연락 및 구매자가 행하는 가맹점에서 취득서비스권의 사용을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각 단말기로 행하고, 가맹점 및 구매자는 자기 또는 구매자의 서비스권의 서비스권 발행자가 관리하는 증감기록을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단말기의 표시장치로 표시·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회선을 이용한 상품거래에서 서비스권의 발행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서비스권의 구매자에게의 제공을 가맹점으로부터 구매자 거래액의 통신회선을 이용한 통지에 의하여, 서비스권 발행자가 통신회선을 이용하여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회선을 이용한 상품거래에서 서비스권의 발행방법.

청구항 3

통신회선을 이용하여서 판매점이 발신하는 상품의 문자·화상데이터를, 수신한 구매자가 단말기의 표시 장치에 표시하고, 표시되는 상품을 선택하여, 단말기의 조작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통신회선을 이용한 쇼핑에 있어서, 판매점 및 구매자의 각각의 통신기기를 회선으로 잇고, 판매점은 각 구매자의 개별 리스트, 개별서비스권의 발행·취득에 의한 증감데이터의 연산·기억·관리수단을 가지며, 판매점이 행하는 거래액에 따른 서비스권의 구매자에게 제공의 연락 및 구매자가 행하는 판매점에서의 취득 서비스권의 사용을 통신회선을 이용하여서 각 단말기로 행하고, 판매점 및 구매자는 자기 또는 구매자의 서비스권의 증감기록을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단말기의 표시장치로 표시·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회선을 이용한 상품거래에서 서비스권의 발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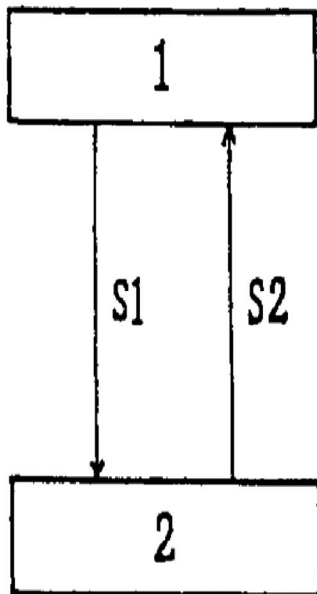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판매점이 복수의 계열점으로 조직되어 있는 통신회선을 이용한 상품거래에서 서비스권의 발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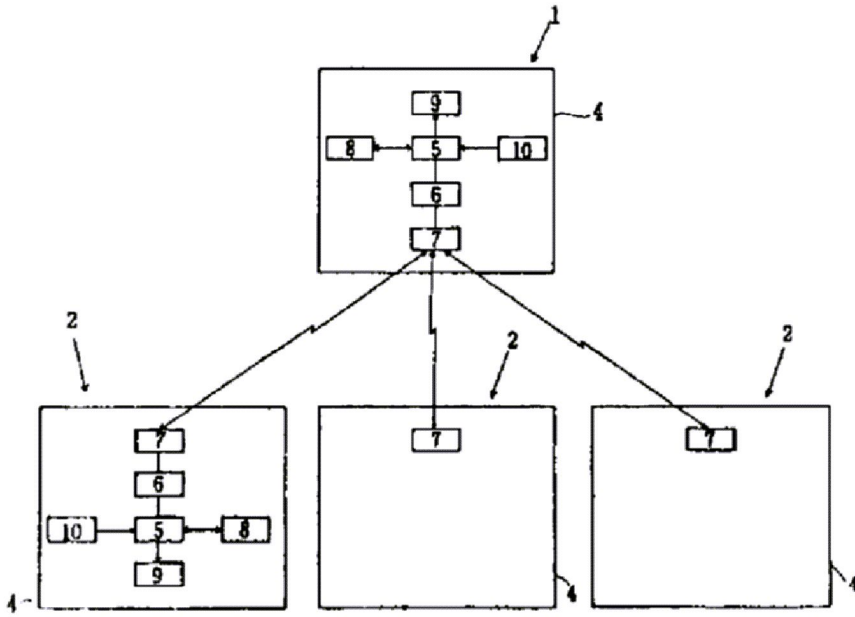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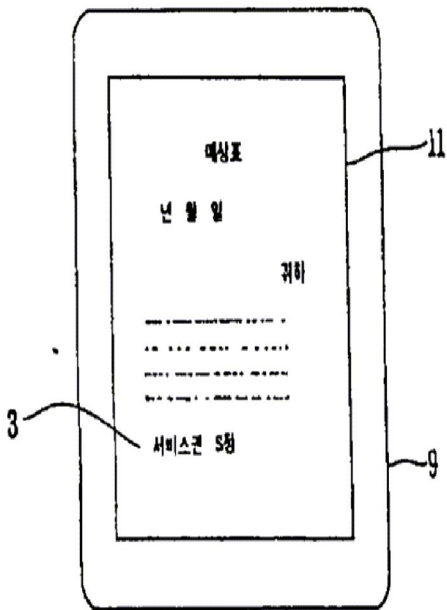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